

## 루터대학원 신학과 경건회 및 교회실습 규정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학원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적응함으로 성직자와 기독교 사회봉사자로서 필요한 기독교적 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. (2017.1.26.개정)

**제2조(업무관장)** 경건회 출석 및 교회실습은 교목처에서 관장한다. (2005.2.11.개정), (2020.4.29.개정),(2020.8.25.개정)

### 제 2 장 경 건 회

**제3조(경건회 참석)** ① 신학과 학생은 매주 정규 경건회(화, 금요일)에 모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교목처가 규정한 보충 훈련을 받아야 한다. 단, 국가 재난 상황에 따른 비대면 수업(온라인 예배)은 출석으로 인정한다. (2017.1.26.개정),(2020.4.29.개정)

② 삭제 (2008.6.1.)

**제4조(평가 및 징계)** ① 불가피하게 불참할 시 교목처의 지시를 받아 특별 훈련을 받아야 한다.(2020.4.29.개정)

② 경건회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되며, 차기 학기에 재등록하여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경건회 학점에 이상이 있는 동안은 장학금 및 기타 혜택에서 일체 제외된다.

### 제 3 장 신학과의 교회실습

**제5조(목적)** 신학과 학생은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로서 이미 섬기고 있거나 앞으로 섬길 자이므로 목회자로서 그리고 사회봉사 지도자로서 필요한 실무 경험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6조(실습학점)** 매학기 1회 실습보고서를 제출하며 총 6회 제출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.

① 1학기당 2학점으로 산정한다.

② 재학 중에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대상자에서 제외한다.

③ 실습보고서는 실습교회의 담임목사가 학점을 부여하여 인비로 교목처에 제출한다. (2005.2.11.개정),(2017.1.6.개정),(2020.4.29.개정)

**제7조(실습의 원칙)** ① 신학과 재학생은 학기초에 실습교회에 관하여 교목처에 보고 한다. (2005.2.11.개정),(2020.4.29.개정)

② 실습교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교목처에 보고한다. (2017.1.26.개정),(2020.4.29.개정)

③ 실습보고서는 정한 양식에 의한다.

④ 실습생은 가능한 다양한 실습현장의 경험을 습득하도록 한다.

⑤ 실습생은 기독교 지도자로서 교회와 복지 기관의 모범적 일꾼으로 섬겨야 하며, 겸허하고 부지런히 봉사하고, 실습지 현장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.

⑥ 실습생은 실습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